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고단246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고단2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지웅(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한용현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친구 B과 공모하여 2020. 9.8. 16:20경부터 같은 날 18:5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C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여, 20세)를 초대한 다음, 여성의 신음소리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합의하에 나랑 섹스한 게 뭔 범죄야?', '니는 채팅으로 모르는 남자나 만나고 섹스한 게 당 당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B이 '야 OO아 천천히 쎄게쎄게 기옥안나?, 너가 A이한 테 천천히 세게세게 박으라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자, 'ok'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친구 B과 공모하여 2020. 9. 8.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C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여, 20세)을 초대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B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처럼 피해자를 추궁하고, B이 변기에 오물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너가 그날 싼 거자나 끝나고 모텔에서', ,'아니 똥쌌고 방구꼈으면 인정을해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진짜존나 뻔뻔하네→ 그게 사람대 사람으로 할말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기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0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초대하여 신음소리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기까지 하면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했다.
- 2020. 5.에도 친구들과 있는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여성 지인들을 초대해 비슷한 대화를 시도하는 등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여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장난을 칠 생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어 동기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만 20세에 불과하고 이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김이슬